

제3차 설계변경 자문회의(소위원회) 검토의견서

| 건 명 | 검 토 의 견 |
|--|--|
| 장기지하차도~동부간선도로간 연결로 설치공사 - 방호벽 철거 공법변경 | - P5 공사개요의 내용에 보면 E.D.C.S 철거 공법은 Ramp A P10교각을 철거시 기시행한 공법이기에 기존단가를 사용했는데, 절단부재인양 단가와 인양을 위한 코어천공 및 소형브레이커 깨기등의 기존단가는 없었는지 설명이 필요함. - 신규단가를 협약서에 의거 협의율 100%로 적용한 협의서가 미첨부 되었기에 첨부 바람. 또한 강제협의율을 적용하지 않은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. |
| 반포천 유역 분리터널 건설공사 - 사토장 선정 및 운반거리 변경 | - 특이한 이견 없음. |
| 반포천 유역 분리터널 건설공사 -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법정요율 변경 | - 특이한 이견 없음. |
| 중랑천 초안산앞 보행교량 설치공사 - 교량점검시설 추가설치 | -P114-115 C,D 설치품 적용시 위험할증률(고소작업 20%+ 활선근접작업 30%)적용하였으나, 품셈상 할증의 중복가산요령에 동일성격(위험성)의 품 할증요소의 이중적용은 불가함. |
| 중랑천 초안산앞 보행교량 설치공사 - 월계역 공영주차장 주변 보도 개선에따른 옹벽철 거 및 재설치 | -신호수 및 보행안전도우미 각각 1일 2인×10일 =20일 적용하였고 철도 운행안전관리자 1일 1인×30일 = 30일 적용하여 공사기간에 따른 적용이 신호수와 상이하고 실제 소요일로 정산 반영하시기 바람. |
| 중랑천 초안산앞 보행교량 설치공사 - 계단부 캐노피 설치(민원 처리) | -특이사항 없음 |
| 중랑천 초안산앞 보행교량 설치공사 - 월계역 공영주차장복구 (포장) 및 개선공사 | -P.735 #2 절삭후 아스팔트 덧씌우기 지세할증 25% 전공정 재+노+경 적용하였으나, 지세할증의 노임에 대한 할증이며, 적정여부 재검토 필요. -P.735 #2 재료비 아스팔트 표층 69,000원 적용하였으나, P.768 단가비 교표상 근거가 없으며, 기존단가 60,051원/87.67%= 68.496원과 상이함. |

2019년 4월 18일

설계변경자문위원 소속

성명 이 기 수 

2019년 제3차 설계변경 자문회의(소위원회) 검토의견서

| 건 명 | 자 문 의 견 |
|---|--|
| <p>장지하차도~동부간선도로간 연결로 설치공사 - 방호벽 철거 공법변경</p> |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방호벽 철거시 낙하물 방지방법 검토할 것. 2. 설계서 단위 포기량정 예) M → m 3. P34 P6P 절단코어 천장, 수직절단 58중 58로크 5/중, 5/로 4. P34 양 끝(단가 단층서)은 1회 인양시 $0.3m^2 \times 5m = 1.5m^3$을 인양하므로 양 = 1.5가 되어야 하는 것 아닌지 검토할 것. 5. 절단 절단 목재 줄량이 $0.3m^2 \times 5m \times 2.4ton/m^3 = 3.6 ton$ 인데 160 ton 크레인은 4톤까진 사용 설명한 것. |
| <p>반포천 유역 분리터널 건설공사 - 사토장 선정 및 운반거리 변경</p> |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내역서 포기시 당초 변경 수분은 명확히 다져 포기할 것 |
| <p>반포천 유역 분리터널 건설공사 -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법정요율 변경</p> | <p>—</p> |

2019년 4월 18일

설계변경자문위원 소속 (주) 동인기술공사 성명

유 가람 (성명)

| 건 명 | 자 문 의 견 |
|--|--|
| <p>중랑천 초안산앞 보행교량 설치공사</p> <p>- 교량점검시설 추가설치</p> | <p>1. 도면수량과 산출내역서 수량 일치 시킬 것.</p> |
| <p>중랑천 초안산앞 보행교량 설치공사</p> <p>- 월계역 공영주차장 주변 보도 개선에따른 옹벽철 거 및 재설치</p> | <p>1. 내역서 P267 인양호 천공 비고 로프 표기옳음: 20호로 → 18호로 2. 산출내역서 (P273) 18호로 ⇒ 내역서 적용과 산출내역 서 대한 지적 통발 시킬 것 <u>용(산출내역서:공, 내역서:m)</u></p> |
| <p>중랑천 초안산앞 보행교량 설치공사</p> <p>- 계단부 캐노피 설치(민원처리)</p> | <p>—</p> |
| <p>중랑천 초안산앞 보행교량 설치공사</p> <p>- 월계역 공영주차장 복구 (포장) 및 개선공사</p> | <p>① P83 미끄럼방지 차선도색 ⇒ 미끄럼 방지 포장으로 이음 현상 ② P131 미끄럼 방지로장 내역서, 산출, 수량 산출서 일치 일치 시킬 것 ③ P84 도면: 주차시 차량출입 방지용 곡물포시설 검토.</p> |

2019년 4월 18일

설계변경자문위원 소속 (주) 동원기술공사 성명 유 기성 (서명)

제3차 설계변경 자문회의(소위원회) 검토의견서

| 건 명 | 검 토 의 건 |
|--|---|
| 장지하차도~동부간선 도로간 연결로 설치공사 - 방호벽 철거 공법변경 | - Page35, 36 : 제2호표, 제3호표 코어천공 단가산출서증 1) 기계손료 및 노무비 적용시 Page51 품셈1-8 배관을 위한 구멍뚫기에 의거 콘크리트두께150mm와 300mm 가중평균치값 사용이 필요함. 2) Page35 노무비 0.866인 → 0.798인, Page36 기계손료 6.233hr → 6.257hr 노무비 1.226인 → 1.101인 |
| 반포천 유역 분리터널 건설공사 - 사토장 선정 및 운반 거리 변경 | - 토석정보시스템 활용결과 첨부필요. - 표준품셈 적용 비교 단가산출근거 첨부필요. - 토사반입동의서 양기석 날짜누락 명기필요 - 개인사토장 공사전, 중, 후 사진 첨부필요. |
| 반포천 유역 분리터널 건설공사 -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법정요율 변경 | - 조달청 질의회신(접수번호2AA-1812-142528) <답변사항> 중 ----- 발주기관에 산업안전보건관리비가 적정하게 반영될수 있도록 협조요청 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의 조달청 협조요청 공문 첨부필요. |
| 중랑천 초안산앞 보행교량 설치공사 - 계단부(계단1,4) 상부 캐노피(민원)공사 | - Page558 #7단가산출 합계와 Page559 단가산출 재,노,경 불일치 함. |
| 중랑천 초안산앞 보행교량 설치공사 - 교량 점검시설 설치 | - 의견없음 |
| 중랑천 초안산앞 보행교량 설치공사 - 월계역 공영주차장 복구 및 개선(포장)공사 | - Page735 #2 절삭후아스팔트덧씌우기 단가중 1) 불연속구간 적용근거는? 2) 인건비 3)보통인부(신호)는 내역서 중복계상여부 확인필요. - Page740 #6 보차도경계석설치 단가중 1) 거푸집설치수량 0.45㎡ 적용오류 → 0.46㎡ |

| 건 명 | 검 토 의 견 |
|--|--|
| <p>중랑천 초안산앞 보행교량 설치공사</p> <p>- 월계역 공영주차장 주변 보도 개선에 따른 옹벽 철거 및 재설치</p> | <p>- Page293 #18 인양용 천공 단가중</p> <p>1) 인양하중 7.4ton이상조건 Page395 철거공사계획도 도면중 철거부재 중량산출서 6.28ton, 4.78ton과 상이함.</p> <p>2) 기타할증등 할증 산출값과 반영분 서로상이(산출1.625 → 적용1.1)</p> <p>3) 인양홀 평균두께 t=0.425m이나 단가산출은 t=0.3m적용 수정필요. (수정시 기계손료 및 노무비 적용시 Page51 품셈1-8 배관을 위한 구멍뚫기에 의거 콘크리트두께150mm와 300mm 가중평균치값 사용이 필요함) → 노무비 0.570인 → 0.777인, 기계손료 3.40hr → 4.808hr</p> <p>- Page295 #20 톤마대 쌓기 및 헐기 단가중</p> <p>1) 쌓기, 헐기 굴삭기규격 오류 0.2m³ → 1.0m³ 수정필요.</p> |
| | |
| | |

2019 년 4 월 18 일

설계변경자문위원 소속 (주)동일기술공사 성명 이 영 모 서명 

2019년 제3차 설계변경 자문회의(소위원회) 검토의견서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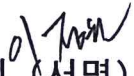
| 건 명 | 자 문 의 견 |
|---|---|
| <p>장지하차도~동부간선도로간 연결로 설치공사 - 방호벽 철거 공법변경</p> | <p>○ 별도의견 없음</p> |
| <p>반포천 유역 분리터널 건설공사 - 사토장 선정 및 운반거리 변경</p> | <p>○ 사토장 운반도로와 평균주행 속도 조정 요망 - 팔당IC ~ 사토장 구간 주행속도(적재/공차) · 설계 (30/35) → 변경(35/35)</p> <p>○ 스마트 송장 시스템 도입 요망 (운반비 × 1.5%) - 사토 등 차량 운행시 운전자 스마트폰에 스마트 송장 앱을 설치후 · GPS를 통해 운반경로 및 상하차지 자동 운행 관리 시스템 적용</p> |
| <p>반포천 유역 분리터널 건설공사 -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법정요율 변경</p> | <p>○ 별도의견 없음</p> |

2019년 4월 18일

설계변경자문위원 소속 토목부 성명 이정원 

| 건 명 | 자 문 의 견 |
|--|------------------|
| <p>중량천 초안산앞 보행교량 설치공사</p> <p>- 교량점검시설 추가설치</p> | <p>○ 별도의견 없음</p> |
| <p>중량천 초안산앞 보행교량 설치공사</p> <p>- 월계역 공영주차장 주변 보도 개선에따른 옹벽철 거 및 재설치</p> | <p>○ 별도의견 없음</p> |
| <p>중량천 초안산앞 보행교량 설치공사</p> <p>- 계단부 캐노피 설치(민원처리)</p> | <p>○ 별도의견 없음</p> |
| <p>중량천 초안산앞 보행교량 설치공사</p> <p>- 월계역 공영주차장 복구 (포장) 및 개선공사</p> | <p>○ 별도의견 없음</p> |

2019년 4월 18일

설계변경자문위원 소속 토목부 성명 이정원  (서명)

2019년 제3차 설계변경 자문회의(소위원회) 검토의견서

| 건 명 | 자 문 의 견 |
|--|-----------|
| 장지하차도~동부간선도로간 연결로 설치공사 - 방호벽 철거 공법변경 | - 별도 의견없음 |
| 반포천 유역 분리터널 건설공사 - 사토장 선정 및 운반거리 변경 | - 별도 의견없음 |
| 반포천 유역 분리터널 건설공사 -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법정요율 변경 | - 별도 의견없음 |

2019년 4월 18일

설계변경자문위원 소속

토목부

성명

박운용



| 건 명 | 자 문 의 견 |
|--|--|
| <p>중랑천 초안산앞 보행교량 설치공사</p> <p>- 교량점검시설 추가설치</p> | <p>- 별도 의견없음</p> |
| <p>중랑천 초안산앞 보행교량 설치공사</p> <p>- 월계역 공영주차장 주변 보도 개선에따른 옹벽철 거 및 재설치</p> | <p>- P295 톤마대쌓기 및 헐기 59,070원 산출하였으나, 표준시장단가 (AA21) 적용시 38,061원으로 재검토 바람.</p> |
| <p>중랑천 초안산앞 보행교량 설치공사</p> <p>- 계단부 캐노피 설치(민원처리)</p> | <p>- 별도 의견없음.</p> |
| <p>중랑천 초안산앞 보행교량 설치공사</p> <p>- 월계역 공영주차장 복구 (포장) 및 개선공사</p> | <p>- p768. 자재단가 조사시 도로표지용페인트(웅착식) 백색, 황색 조달단가 확인 요망.</p> |

2019년 4월 18일

설계변경자문위원 소속

토목부

성명 박운용



2019년 제3차 설계변경 자문회의(소위원회) 검토의견서

| 건 명 | 자 문 의 견 |
|--|--|
| 공 통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설계변경 사유 및 실정보고 첨부 서류 등은 설계변경자문 요청서에 반드시 첨부(설계변경 근거 상세 첨부) • 설계변경 원인이 설계자의 하자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설계변경(안)에 대한 설계자 의견서를 반드시 제출.('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' (국토부 고시 제2018-385호)) • 사토운반거리 및 통행속도는 '건설공사 표준품셈'을 준용하되 차로수, 교통량 등 현황조건에 따라 주행속도를 측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므로 서울시 교통정보과(topis.seoul.go.kr/교통정보자료실/도로별통행속도자료실)의 자료를 참고할 것 |
| 장지하차도~동부간선도로간 연결로 설치공사 - 방호벽 철거 공법변경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서울시설공단 공문 등 관련근거를 첨부할 것 |
| 반포천 유역 분리터널 건설공사 - 사토장 선정 및 운반거리 변경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사토운반거리 및 통행속도는 '건설공사 표준품셈'을 준용하되 차로수, 교통량 등 현황조건에 따라 주행속도를 측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므로 서울시 교통정보과(topis.seoul.go.kr/교통정보자료실/도로별통행속도자료실)의 자료를 참고하여 표준품셈과 비교할 것 |
| 반포천 유역 분리터널 건설공사 -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법정요율 변경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의견없음 |

| 건 명 | 자 문 의 견 |
|--|---|
| <p>중랑천 초안산앞 보행교량 설치공사</p> <p>- 교량점검시설 추가설치</p> | <p>• 품의 할증은 중복하여 계상할 수 없으며, 위험할증율로 적용한 항목은 건설공사 표준품셈의 '공통부문' 1-4-3. 16. 할증의 중복가산요령을 적용할 것</p> |
| <p>중랑천 초안산앞 보행교량 설치공사</p> <p>- 월계역 공영주차장 주변 보도 개선에따른 옹벽철 거 및 재설치</p> | <p>• 의견없음</p> |
| <p>중랑천 초안산앞 보행교량 설치공사</p> <p>- 계단부 캐노피 설치(민원처리)</p> | <p>• 의견없음</p> |
| <p>중랑천 초안산앞 보행교량 설치공사</p> <p>- 월계역 공영주차장 복구 (포장) 및 개선공사</p> | <p>• 의견없음</p> |

2019년 4월 18일

설계변경자문위원장 토목부 토목설계과장 김 동 현 (서명)